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2.11.18.

복지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달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 제출일자: 2022. 11. 04.(금)
- 회부일자: 2022. 11. 04.(금)
- 상정 및 의결: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2.11.18.)

### 2. 개정이유

- 자활기금의 연체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존속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자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기금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관련법령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안 제4조)
- 나. 기금 대여 연체이자율을 연 15%에서 연 5%로 하향 조정함(안 제6조)
- 다. 기금의 존속 기한을 삭제함(안 제14조)

###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6, 제18조의7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고, 기금 대여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기금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임의로 설치하는 기금과 달리 법률에 따른 기금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으로써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됨.
- 2019년 1월 15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제1항에서 임의규정이던 자활기금의 적립이 강행규정으로 개정(2019년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가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따라 기금을 지속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함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
-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자활사업 안내」에 따르면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시중의 연체이자율을 반영하여 연체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5%로 하는 것으로 이는 자활기금의 성격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 시중은행 이자율 현황

구분	연체이자율	최고연체이자율	비고
KB 국민은행	대출금리+3%	15%	
DGB 대구은행	대출금리+3%	15%	
하나은행	대출금리+3%	15%	
신한은행	대출금리+3%	15%	
NH 농협은행	대출금리+3%	15%	

- 따라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됨.

## 6. 질의 ·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